

의안번호	2211872
의 퇴 인	이기현 의원
회 답 일	2025. 11. 13.
추계번호	25A4103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조의2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생계형 소상공인 ¹⁾ 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 ²⁾ 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제1항)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 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제2항) *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 제74조(과태료):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한 개별가맹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2조의2 신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특례)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생계형 소상공인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
 - 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 등에 입점하지 않은 생계형 소상공인이더라도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여 매출 증가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
 -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따른 수수료와 할인판매에 따른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면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 및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³⁾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사업량 증가분에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판매액이 수요 증가분만큼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종류별(지류·디지털) 상품권 판매 증가량에 발행·운영수수료율 및 할인보전율(판매단가)을 곱하여 추계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을 운영 중인 사업체 중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등에 위치하지 않은 사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고, 사용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도 부족하므로 온누리상품권 판매 증가량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이에 생계형 소상공인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경우 수반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3)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수요 증가가 반드시 사업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비용추계의 일반적인 전제에 따라 여기에서는 가맹점 및 수요 증가에 수반하여 예산이 확대될 것임을 전제로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함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총 7개로,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총 2만 6,924개, 연평균 매출액은 총 11억 6,600만원임

* [참고자료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황

- 온누리상품권의 발행·판매 및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5년 9월까지(1.1~9.30) 2조 7,32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2024년 말까지의 누적 미판매액과 2025년 신규 발행액을 합한 금액 3조 4,178억원 중 3조 1,230억원(91.4%)이 판매되었음

- 2024년 말까지의 누적 미회수액과 2025년 신규 판매액을 합한 금액 4조 666억원 중 2025년 9월까지(1.1~9.30) 3조 535억원(75.1%)이 회수되었음

* [참고자료 2]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및 회수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예산 산출 근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종류별 발행·운영 수수료율은 지류형의 경우 2.8%, 디지털(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0.58%이며, 할인보전율은 지류형의 경우 0(비할인판매) 또는 5%, 디지털(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5% 또는 10%임

* [참고자료 3]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산출 근거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현황

업종별 소상공인 사업체 수

(단위: 개)

구분	생계형 지정 (통계연도)	업종	사업체 수
1	2021(2020)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13,648
2	2021(2020)	국수 제조업	273
3	2021(2020)	냉면 제조업	93
4	2024(2020)	LPG연료 소매업	3,630
5	2024(2023)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6,127
6	2025(2020)	두부 제조업(두부 및 유사 식품제조업)	1,826
7	2025(2020)	장류(4종) 제조업(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구분 불가)	1,327
계			26,924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5년 주기) 및 서비스업조사]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단위: 백만원)

구분	생계형 지정 (통계연도)	업종	연평균 매출액
1	2021(2020)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53
2	2021(2020)	국수 제조업	200
3	2021(2020)	냉면 제조업	176
4	2024(2020)	LPG연료 소매업	246
5	2024(2023)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225.5
6	2025(2020)	두부 제조업(두부및유사식품제조업)	146.8
7	2025(2020)	장류(4종) 제조업(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구분 불가)	118.5
계			1,165.8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국가데이터처 경제총조사(5년 주기) 및 서비스업조사]

[참고자료 2] 온누리상품권 발행·판매 및 회수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발행액	누적 발행액 (A)	판매액	누적 판매액 (B)	누적 미판매액 (A-B)	회수액	누적 회수액 (C)	누적 미회수액 (B-C)
2018	15,016	64,197	14,916	60,610	3,587	14,704	58,518	2,092
2019	20,074	84,271	16,853	77,463	6,808	16,622	75,141	2,322
2020	40,487	124,758	40,139	117,602	7,157	34,085	109,226	8,376
2021	31,573	156,331	31,721	149,323	7,008	33,809	143,034	6,289
2022	35,391	191,722	27,034	176,357	15,365	25,260	168,294	8,063
2023	20,242	211,964	28,537	204,894	7,070	30,563	198,857	6,037
2024	42,880	254,844	43,092	247,986	6,858	39,692	238,550	9,436
2025 (9월)	27,320	282,164	31,230	279,216	2,948	30,535	269,085	10,13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3]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산출 근거

구분	종류	발행계획액 (A)	발행·운영 수수료(B)	할인보전율 (C)	2025년 예산 [A×(B+C)]
비할인	지류	0.8조원	2.8%	0	22,400백만원
할인	지류	0.9조원	2.8%	5%	70,200백만원
	디지털	2.3조원	0.58%	5%	128,340백만원
	디지털	1.5조원	0.58%	10%	158,700백만원
환급 행사	취약상권 환급 활성화(10% 환급행사)				64,500백만원
	특별재난지역 환급 지원(10% 환급행사)				3,425백만원
기타운영비					11,108백만원
합계					458,673백만원

주: 1. 추정 포함

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온누리상품권 발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